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7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063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9. 4. 9.
판 결 선 고	2019.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 10,284,4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1]).

이 유

1)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소장 별지 2 '매매계약 목록', 답변서, 을 제2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경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림에 있는 나무를 매수하기로 하는 각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계약에 따라 나무를 취득하였다.

소재지	[redacted]군 B	[redacted]군 C
벌채면적	2,749.96㎡	2,263㎡
본수	11,735본	3,171본
매매대금	131,570,000원	155,680,000원

나.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7.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284,4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입목을 벌채한 목재)임에도,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목' 취득에 대하여 '입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및 여러 하급심 판결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진 점,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7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6조 제11호에 의하면, 입목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입목'이란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과수, 임목, 죽목을 말하므로,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밀집한 숲을 이룬 수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계약의 목적물로 되었다면 그 수목은 구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1983. 10. 11. 선고 82누5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원목'을 생산·취득하여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 제2조 제2항, 제4조 등은 원고가 입목을 '벌채'하여 그 뿌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 점, ③ 피고도 원고가 원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7

면, 원고는 '지상에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는 임목'이 아니라 이를 벌채한 원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의 사이에서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입목이 아니라 벌채를 위한 원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각 계약을 통하여 입목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7

2) 판단

'원목' 취득에 대하여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1)항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계약 목적물이 '입목'인지 '원목'인지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특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취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 계약서의 여러 규정,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이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물이 입목이 아니라 벌채를 위한 원목이라는 점 및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2017두52368)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9. 14. 선고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7

재판장 판사 성 지 호

판사 이 주 일

판사 오에스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7

별지 1

지방세 부과내역

		부과금액				
		부과본세	부과가산세	부과가산금	중가산금	부과합계
B	취득세	2,631,400	645,480	98,300	996,280	4,371,460
	농어촌특별세	263,140	11,920	8,250		283,310
	합계	**2,894,540**	**657,400**	**106,550**	**996,280**	**4,654,770**
C	취득세	3,113,600	731,070	115,340	1,337,770	5,297,780
	농어촌특별세	311,360	10,830	9,660		331,850
	합계	**3,424,960**	**741,900**	**125,000**	**1,337,770**	**5,629,630**
총 합계 10,284,400원 (=4,654,770원 + 5,629,63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17

별지 2

관계 규정의 표시

■ 지방세법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 (끝)